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30
----------	------

제출년월일 : 2010년 4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제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각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 (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 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최저 등록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
2.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섬이나 외딴곳,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3.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외에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 별 시	광 역 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 (최 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 형	36m' ~ 40m'
2) 중 형	23m' ~ 26m'
3) 소 형	15m' ~ 18m'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13m' ~ 15m'
2) 개인택시	<u>10m' ~ 13m'(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u>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⑥ ~ ⑦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영차고지의 건설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3. 유가 인상액의 보조
4.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
5. 화물자동차의 감차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제13조관련)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 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주차 여 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 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타인 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 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제천시 공고 제 2010 -195호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제 천 시 장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레 명 :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로서 유료임차 차고자를 사용함으로 인해 연평균 20만원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이들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상기 규칙에 근거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허가)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안 제3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31일 까지 제천시장(참조 교통과 교통행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641 - 5262, FAX 641 - 5299 담당자 : 김남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교통행정팀 장	교통과장					
최명훈	전결 04/05 이근덕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10-195호
3. 공고기간 : 2010.02.26 ~ 03.31(24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읍면동게시판,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불임
6. 공고결과
 - 조회자 수 : 109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공고안 1부 (별지) 끝.

2010. 04. 02.

보고자 : 교통행정팀장 최명훈

제천시장 귀하